

林業基金制度 設置에 關한 研究

沈 鍾 奸

[林政研究会 報告書 ; 219 ~ 283, 1972]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Forest-Foundation

Chong Sup Shim

[Rep. of Korean Society of Forest Policy ; 219 ~ 283, 1972]

結論

本調查研究는 林業基金制度를 設定하기 위하여 必要한 材料를 審集検討키로 하였다. 따라서 첫째 山林事業에 對한 国家的 要請이 무엇인가를 檢討하였고 다음에 이와 같은 重且大한 国家的 要請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中枢의 役割을 担當하여야 할 民有林의 經營이 不振한 理由를 밝혀 보았으며 이를 理由中에 重要한 것의 하나가 바로 山林所有者들의 財力不足과 林業의 長期投資性이라는 것을 發見하였다. 다시 그렇다면 政府에서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民有林 經營 指導育成을 위하여 어떠한 財政的 支援을 하여 왔으며 또한 現在 林業金融実態는 如何한가를 檢討하여 보았다. 한편 外國에서는 民有林經營에 있어서 財政的 支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參考삼아 알아 보았다. 그 結論은

(1) 우리나라에는 不足한 木材와 林產燃料生產, 水資源涵養, 国民生活環境調節, 國土保存 등 国家經濟發展과 더불어 있어야 할 国利民福을 위하여 山林事業은 他產業에 뒷지 않은 重且大한 国家的 使命을 가지고 있음을 再確認하였고

(2) 民有林經營에 있어서 問題点이 되어 있는 것은 零細山主群의 經營不在狀態, 山林의 長期投資性, 所有

者들의 財力不足과 技術不足, 不在山主들의 放任狀態 등으로 이 중에서도 특히 財政支援의 必要性을 再認識하였으며

(3) 그間 政府에서는 莫大한 國庫豫算을 支出하여 가면서 補助造林을 热心히 하여 왔지만 이 補助政策만으로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움을 認知하게 되어

(4) 最近 林業金融面에서 점차 改善策을 取하여 왔으나 그 程度의 施策으로서는 当面한 林業金融問題를 解決하기에는 不充分함을 알게 되었다.

(5)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外國에서는 民有林經營을 支援하기 위하여 어떠한 財政的 支援策을 쓰고 있는가를 알아 본바 역시 많은 나라들이 林業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長期 低利融資制度를 設定하여 實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6)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저와같이 不振狀態에 빠져있는 民有林經營을 積極 支援하여 国家의으로 要請되고 있는 山林事業의 劃期의in 發展을 가져오려면 長期低利融資制度가 期必코 있어야 한다는 結論이다.

이와 같은 結論에 따라 이 問題를 制度化하기 위한 法의 制定이 要請되어 다음에 林業基金法案과 林業金庫法案을添附키로 하였다. ■